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05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정점식 · 박충권 · 김태호
성일종 · 신성범 · 고동진
서천호 · 김성원 · 엄태영
김정재 · 백종현 · 구자근
강대식 · 김승수 · 김용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옥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 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이하 이 조에서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수담수화, 빗물 이용, 지하수 관리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2. 식수비축 기간, 비축량 및 수질 관리
3. 그 밖에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1조의2(특별대책지역 지정 등)</u></p> <p><u>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 관리 특별대책지역(이하 이 조에서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수담수화, 빗물 이용, 지하수 관리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u> <u>2. 식수비축 기간, 비축량 및 수질 관리</u> <u>3. 그 밖에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u> <p><u>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u></p>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